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2496
----------	------

제출일자 : 2024. 4. 2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사유

-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3.12.31.)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고자 함.

2.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 2013. 04. 01. : 정비예정구역 지정(논공 2개소)
- 2018. 12. 31. : 정비예정구역 지정(화원 3개소)
- 2023. 10. 26. : 정비예정구역 일몰 관련 추진계획 알림(공문 발송)
- 2024. 02. 29. ~ 2024. 04. 15. :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31일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 2024. 상반기 : 군의회 의견청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
- 2024. 상반기 : 해제 요청(郡→市) 예정
 -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해제 여부 결정 예정
 - ※ 차기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에 따라 재지정 가능
- 2024. 상반기 :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예정

3. 주요내용

- 구역명 : 달성군-20-4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외 4개 구역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리 803-3번지 일원 외 4개소
- 내용 : 정비예정구역 해제(5개 구역)
- 해체사유 :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3.12.31.)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 해제조서

구분	구역번호	위 치	구역면적 (㎡)	사업유형	고시일	비고
기정	달성군-20-4	논공읍 북리 803-3번지 일원	19,247	재건축	2013.4.1.	평광현대 1·2차
변경	해 제					
기정	달성군-20-5	논공읍 남리 1147번지 일원	16,239	재건축	2013.4.1.	경일아파트
변경	해 제					
기정	달성군-20-7	화원읍 천내리 118번지 일원	37,941	재건축	2018.12.31.	창신맨션, 에덴타운
변경	해 제					
기정	달성군-20-8	화원읍 천내리 122번지 일원	34,500	재건축	2018.12.31.	천내우방, 평광2차
변경	해 제					
기정	달성군-20-9	화원읍 천내리 42번지 일원	22,433	재건축	2018.12.31.	영남맨션, 동서동산
변경	해 제					

4. 주민 의견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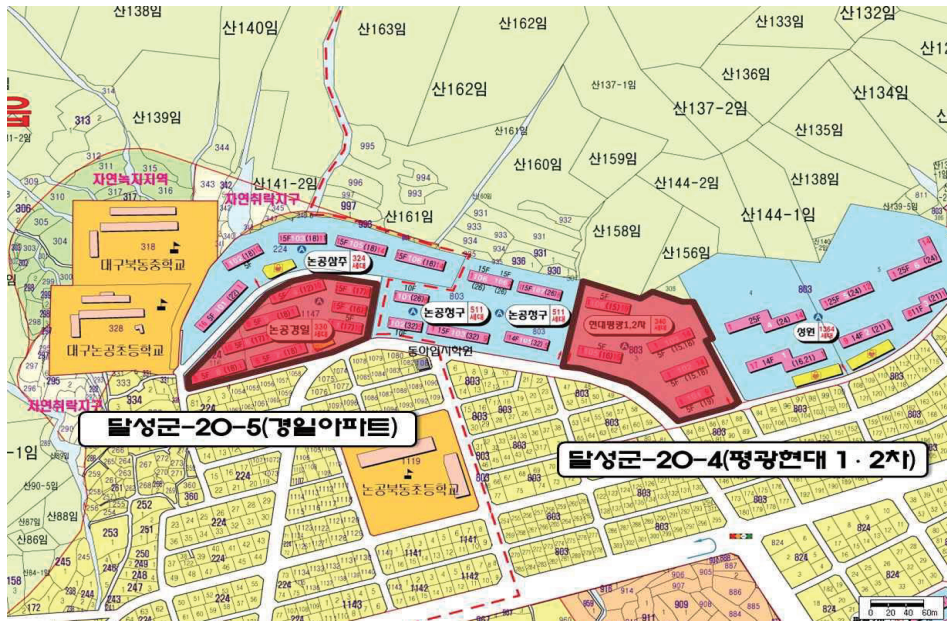
- 기 간 : 2024. 02. 29. ~ 2024. 04. 15.(31일간)
- 장 소 : 달성군 건축과
- 공람내용 :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 청취결과 : 제출의견 없음

5. 관련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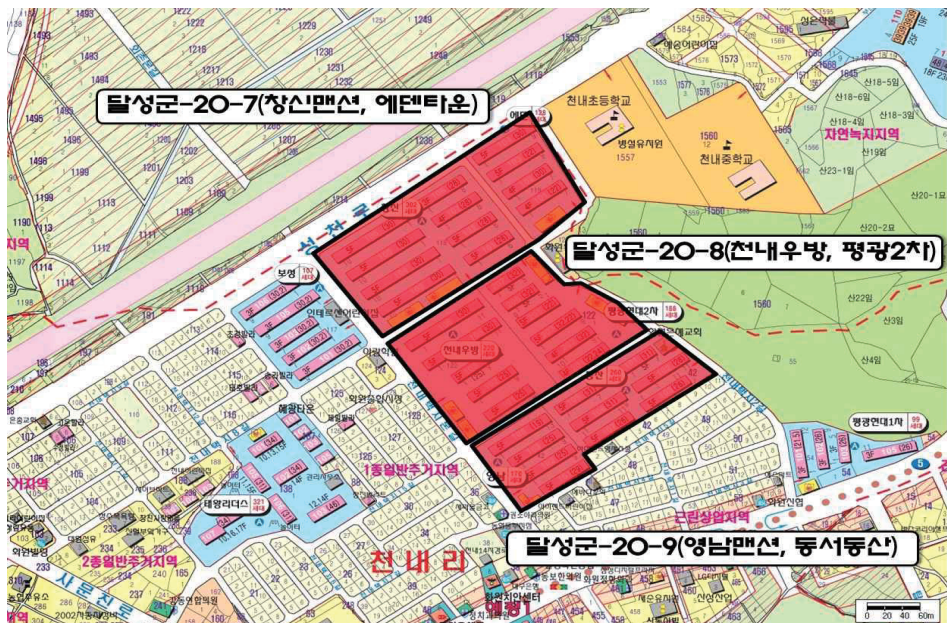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6. 위치도

- 농공읍



- 화원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청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끝.